



## 파트너십에 대한 신규 추가 프로젝트와 활동을 위한 절차

1. 파트너십의 목적에 이바지하며 둘, 또는 그 이상의 어떠한 참여국과도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나 활동은 파트너십에 포함될 자격을 지닌다. 그러한 프로젝트나 활동을 제안하는 참여국은 동 프로젝트나 활동이 어떻게 파트너십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와 파트너십이 그러한 프로젝트와 활동을 추진하며 강화함에 있어 어떠한 촉매의 역할을 하는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. 파트너십에 포함한다는 것은 파트너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, 자금조달을 강화할 수 있고, 파트너십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참여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.
2. 참여국이 파트너십에 새로운 프로젝트나 활동을 추가하기 원하고 그 프로젝트나 활동이 현존하는 태스크포스 활동의 범위 내에 해당할 경우, 동 프로젝트나 활동 사항은 사무국이 정한 표준 양식을 사용하여 관련 태스크포스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, 사무국에도 제출되어야 한다. 동 양식은 프로젝트나 활동의 세부 내용과 더불어 참여국과 참여국의 산업 및 기타 기구의 참여 기회도 상세히 설명되어야 한다.
3. 태스크포스는 제안된 모든 프로젝트와 활동 내용을 취급 업무의 범위 내에서 검토할 것이다. 해당 태스크포스는 개선안을 건의할 수도 있다. 어떠한 참여국으로부터도 4 주 내에 제안된 프로젝트와 활동 내용 및 추가 정보 등에 관한 질의가 없을 경우, 그리고 둘 이상의 참여국이 제안된 프로젝트나 활동에 동의하는 경우, 동 제안 프로젝트는 추진되도록 정책이행집행 위원회로 회부될 것이다.
4. 만일 4 주 이내에, 참여국이 사무국으로 이메일을 사용한 서면으로 프로젝트나 활동에 동의하고 정책이행 위원회의 어느 회원도 질의나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, 동 제안된 프로젝트나 활동은 추진된 것으로 간주하고, 사무국은 동 내용을 “프로젝트 명부” 웹사이트에 포함할 것이다.
5. 제안된 프로젝트나 활동이 현존하는 태스크포스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, 사무국은 정책이행 위원회로 추진을 위하여 직접 동 제안서를 송부할 것이다. 둘 이상의 참여국이 제안된 프로젝트나 활동에 일단 동의한 경우, 그리고 어떤 정책이행 위원회 회원도 6 주 이내에 질의나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, 동 제안된 프로젝트나 활동은 추진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무국은 “프로젝트 명부” 웹사이트에 동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.
6. 새로운 프로젝트나 활동을 제안함에 있어, 참여국은 파트너십을 위하여 지속적인 보고체계를 통하여 동 사업의 이행 보고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. 참여국은 프로젝트나 활동이 태스크포스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고하거나, 감독하거나, 평가하도록 기존의 태스크포스를 사용할 수 있다.

이 문서는 파트너십 헌장, 실무작업 계획 및 공식 성명 (2006년 1월); 태스크포스 지침 (2006년 4월) 및 태스크포스 추가 지침 (2007년 4월) 등과 함께 연계하여 해석하여야 한다.

만일 해당 업무에 관련이 있는 태스크포스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, 감독 업무와 보고 업무는 동 프로젝트나 활동에 관련있는 참여국의 책임사항으로 될 것이며 정책이행 위원회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.